<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 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 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30031 최초 등록일 2013.07.12 최종 등록일 2025.02.19



정보공개서

[(주)지앤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지앤푸드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	丑	번	호	02-3663-9294		스	번	호	02-2642-9458	
가 망	사 업	운 영	부 서	신규사업본부	가맹부서전화번호			호	02-3663-9294	
주			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18(내발산동)					
·	홈 페 이 지 -					대표여	이메일		ycb@gngrp.com	

四十五十五十二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 3. 인수·합병 여부
-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 5. 가맹본부의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가맹사업 시작일
- 2. 가맹사업의 연혁
- 3. 가맹사업의 업종
-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 6. 기타 가맹사업현황
-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11. 가맹금 예치기관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Ⅲ.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2. 영업 중의 부담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4. 영업지역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 8. 경업 및 겸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오픈 절차
- 2. 분쟁 해결 절차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3. 경영활동 자문
- 4. 신용제공 등 내역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주)지앤푸드의 "마포곱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마포곱창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지앤푸드	영업표지		마포곱창 외4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18(내발산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7.03.26	2007.03.26	홍경호	02-3663-9294		02-2642-9458		
법인등록번호	124411-0083139	사업자등록번호		137-81-80324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기메티터	ᄼᄌᆞᄑᆝᅁᆘᄑᆮ	마포곱창 외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18(내발산동)	
가맹본부	(주)지앤푸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홍경호(회장,대표이사)				
	진하영(상무이사)			02-2642-9458	
	박종민(상무이사)				
특수관계인	이미숙(상무이사)				
국무단계단 (임원)	김건표(상무이사)	홍경호	02-3663-9294		
(82)	임보권(상무이사)				
	이주봉(상무이사)				
	정재석(상무이사)				
	박지용(감사)				



3. 인수·합병 여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		마포곱창	2022.10.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B 동	
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 수함	㈜마시명가	양철북	2022.10.01	1011 호(문정동,	박상규
				문정테라타워)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마포곱창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호	서비스표 관련정보	ВІ
마포곱창	마포곱창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해당없음	は中では

5. 가맹본부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111,917,080	60,309,187	51,607,893	220,931,781	18,613,611	13,975,898
2022 년	119,986,619	64,668,521	55,318,098	234,406,822	11,676,534	7,713,423
2023 년	135,461,407	76,978,591	58,482,816	247,850,699	8,327,048	5,164,908

10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에서 임대료수입, 기타 매출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OL 큰	성 되이	사업경력					
구분	이름	현 직위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1±1	2019.10.07~현재	㈜지앤푸드 회장	업무 총괄			
	홍경호	회장, 대표이사	2007.03.26~2019.09.01	㈜지앤푸드 대표이사	업무 총괄			
		네표에서	2025.01.01~현재 ㈜지앤푸드 대표여		업무 총괄			
	박종민	상무이사	2007.03.26~현재	㈜지앤푸드 이사	신규사업 총괄			
가맹사업	이미숙	상무이사	2020.01.01~현재	㈜지앤푸드 이사	관리업무 총괄			
관련임원	김건표	상무이사	2021.07.01~현재	㈜지앤푸드 이사	마케팅업무 총괄			
	임보권	상무이사	2022.08.01~현재	㈜지앤푸드 이사	전략업무 총괄			
	이주봉	상무이사	2024.04.01~현재	㈜지앤푸드 이사	운영업무 총괄			
	정재석	상무이사	2024.04.01~현재	㈜지앤푸드 이사	해외업무 총괄			
	박지용	감사	2021.05.26~현재	㈜지앤푸드 감사	회계감사			
비관련 임원	진하영	상무이사	2007.03.26~현재	㈜지앤푸드 이사	관리업무 총괄			

[※] 이미숙 상무이사, 김건표 상무이사, 임보권 상무이사, 이주봉 상무이사, 정재석 상무이사는 미등기 임원입니다.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준 시 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기문지점	상근	비상근	역전구(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마포곱창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지앤푸드/ 굽네치킨	가맹사업경영 2007.03.26 ~ 현재		굽네치킨(등록번호: 20080200030) 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_1	㈜지앤푸드/ 양철북	가맹사업경영 2022.10.01 ~ 현재		양철북(등록번호: 20130100166) 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지앤푸드/ 에이에스커피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예정	에이에스커피(등록번호: 20240524) 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지앤푸드/ 듀먼카페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예정	듀먼카페(등록번호: 20241556) 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마포곱창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할 수 있는 상표·실용신안·특허 등의 출원된 지식재산권이 없습니다.



II.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마포곱창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13년 2월 6일입니다.

2. 마포곱창의 연혁

마포곱창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주)하모니명가	마포곱창	방을용	2013.01~2013.12	서하남로 539 번길 76
				(교산동,나동 1 호)
ᄷᄱᄔᆀᄜᆉ	마포곱창	박상규	2014.01 2015.00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9
㈜마시명가	미포답증	36π	2014.01~2015.08	(문정동,문정빌딩 301 호)
ᄷᄱᆡ	ᇚᅲᇃᆉ	버나사	2015 00 2010 10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마시명가	마포곱창	박상규	2015.08~2019.10	92번길 50(초이동)
ᄷᄱᆡ	ᇚᅲᇃᆉ	버니사	2010 10 2022 0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167
㈜마시명가	마포곱창	박상규	2019.10~2022.09	B동 1011호(문정동)
/ ▼ /エ/0∥ ਜ ⊏	미ㅠ고차	저미ㅇ	202240 20244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지앤푸드	마포곱창	정태용	2022.10~2024.12	318(내발산동)
/ ▼ /エ/0∥ ਜ ⊏	미ㅠ고차	ゔゔゔ	2025.04. 취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지앤푸드	마포곱창	홍경호	2025.01~현재	318(내발산동)

3. 마포곱창의 업종

마포곱창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마포곱창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마포함성	한식	소곱창, 막창, 양대창			

4. 3개 사업연도 말 마포곱창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日本を含まり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마포곱창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	1년 12월 :	31일	20	22년 12월	31일	2023	년 12월	31일
시탁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27	27	0	27	27	0	13	13	0
서울	8	8	0	7	7	0	3	3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1	1	0	0	0	0	0	0	0
인천	2	2	0	1	1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1	1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1	1	0	2	2	0	0	0	0
경기	12	12	0	13	13	0	9	9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1	1	0	0	0	0
전북	1	1	0	1	1	0	1	1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1	1	0	0	0	0	0	0	0
제주	1	1	0	1	1	0	0	0	0

5. 3개 사업연도 말 마포곱창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마포곱창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 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 말
2021 년	21	10	0	4	0	27
2022 년	27	9	9	0	0	27
2023 년	27	1	8	7	1	13

6. 기타 가맹사업현황

마포곱창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구 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명	행점 및 직영점	수
丁 正	.9. Z	정답표시	등록번호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	㈜지앤푸드	굽네치킨	20080200030	치킨	1095/0	1124/0	1108/0

おとをなるかり

본부	양철북	20130100166	한식	6/0	6/0	14/0
	에이에스커피	20240524	커피	-	-	0/1
	듀먼카페	20241556	커피	-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 자료는 pos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 * 6 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매출이 확인되지 않는 2 곳은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3개가 아닌 실제 11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 및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지역상황, 점주의 노력, 로스율, 레시피 준수 정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기준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매출 및 미래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3년	13	1,463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는 마포곱창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당사의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마포곱창 외에 다른 가맹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 중 마포곱창에 사용한 광고 및 판촉 비용은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1599-1114

항 목		내 용
		①하나에스크로(hanaescrow.com)에 가입 후 로그인 → ②"조회센
에스크로	하나은행 계좌	터"클릭 → ③"프랜차이즈B2B"클릭 → ④주민/사업자 번호입력 →
이용 시	있는 사업자	⑤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⑥"가맹본부명" 선택클릭 → ⑦약관 및
		가맹점사업자 정보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가입완료

		→ 가맹금입금계좌번호로 입금		
	하나은행 계좌 없는 사업자	하나은행 계좌 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영업창구 이용 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하나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 부받아 보관		
게귀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대리인 개설시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마포곱창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금액(단위:만원 /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가입비 개점 전 정보·자료 제공 대가 개점 전 운영교육, 오픈 지원의 대가 	550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 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 성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아니 함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점주 1인)	33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소요
기획관리	1. 설계 자문	FFO	공사 완료 이후	가맹점 공사 제반의 업무를 보
비	2. 공사의 감리	550	반환 안됨	조, 감독하는 비용으로 소요

나. 보증금

해당 없음 : 당사는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을 받지 않습니다.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만원/VAT 포함)
합 계	1,430
가맹비	550
교육비	330
기획관리비	550

日本の日本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마포곱창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66 m² 기준/단위:만원/VAT 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m²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	협력업체 (미지정)	4,180	209		인테리어 계약금의 반환은
간판	협력업체 (미지정)	660		가맹 계약 시 개별	하지 않으며, 공사 착수 후 계약 해지시는 계약 해지일까지의 소요비용을 지불하면 됨.
주방기기/기물	협력업체 (미지정)	1,320		계약	주방기기 설치 및 집기 납품전
주방, 홀집기/소모품	협력업체 (미지정)	550			계약해지 시 전액 환불이나, 설치 및 납품 후 계약 해지 시에는 반품 불가함.
합계	-	6,710		-	-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위 표의 면적 3.3 m'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 m'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기준면적 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정률로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 ③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주방 및 홀급배기(후드포함),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 ④ 판촉 및 홍보비는 실비입니다.
- 라.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마포곱창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日本の教室大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
ᄀᆝᄜᄾᆡᇚᆉ		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
가맹희망자		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
		다.

마.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ㆍ 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만원/VAT 포함)	지급시기
예치 가맹금	1,430	계약 체결 시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지급 대상자	금 액(단위:원/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해당없음		
	수시 교육	가맹 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개점 이후 교육비	특별 교육	가맹 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안됨
	재교육	가맹 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개별 청구	교육 실시 후 반환 안됨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 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안됨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간판교체, 인테리어 (장비,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협력업체 (미지정)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VII-1 참조

DIE MEAN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금전지급의무의				
지연	지급기한	가맹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개별	
이자	경과시	본부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	청구	
	지연이자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 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귀하가 관련 법령과 Q.S.C.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포곱창』 가맹점 평가표(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점검표)'에 의해 매뉴얼 준수, 조리, 서비스 이행 여부, 가맹점포의 청결 및 위생상태, 기타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고지된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검사를 위하여 제품을 수거해갈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 또는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POS 운영, 기타 점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귀하에게 그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에 "지역담당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담당자"가 파견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파견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통상의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합니다.

귀하의 업무현황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당사의 "지역담당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등 당사의 관리감독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일 전까지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된 경우에는 반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된 경우에는 반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된 경우에는 반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교육비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에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 만료 및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기한 내에 당사가 정한 종료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마포곱창』시스템 및 식단, 조리법, 운영방법, Know-how 등 『 마포곱창』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과 간판, 휘장, 로고, 통화연결음 서비스 등 『 마포곱창』에 관한 일체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 귀하의 비용으로 7일 이내에 귀하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위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 2)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귀하는 『마포곱창』 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당사가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 포의 운영에 관련된 자료와 문서를 당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 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3)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환을 요청할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할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수 없습니다.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마포곱창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가. 귀하가 마포곱창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①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상기 품목의 세부 내용들은(원부재료의 품목 및 제조사 포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④ 당사는 영업 이전에 인테리어, 설비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자율에 맡기고, 영업이후에 품목은 원부자재만 공급합니다.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101王600日村

귀하가 마포곱창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직전사업연도에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가. 당사가 마포곱창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사업연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나. 당사가 마포곱창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사업연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마포곱창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소곱창구이, 막창구이, 양대창구이를 주메뉴로 하여 식사류와 함께 판매하는 곱창·양대창구이전문점	마포곱창 양철북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250m 범위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おきを食るなり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 되는 경우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 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만료전
180~90일 사이에 변경된
조건에 대한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귀하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2)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3)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당사의 영업표지 이미지 등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귀하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마포곱창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	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l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당사는 가맹점과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으며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마포곱창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1]년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 갱신 이행 사항

- 1. 귀하는 당사에 대한 상품대금, 대여금 및 기타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합니다.
- 2. 계약 갱신 시 귀하와 당사는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당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 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 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문 시	D-day)

四十五十五十十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2.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		
	까?	+15일 이내	
	(예→B, 아니오→A)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		
	까?		
	(예→B, 아니오→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D-16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00월 이십	
A	x.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으로 가맹계약 체결	D-day	
В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 은 경우
 - 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 1. 가격표·메뉴판·원산지표시·영양성분 분석표 등 "가맹본부"의 운영규칙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표시나 게시, 부착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대금지급의무 ('물품 등'의 대금, 광고비 등)을 위반할 경우
- 3. 교육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 제 12 조 [교육 및 훈련]에서 정한 교육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 나. 제 14 조 [시정조치 등] 제 2항에 의하여 "지역담당자"의 교육입소명령을 받고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Q.S.C.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평가표(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점검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가 맹본부"로부터 제 14 조에서 정한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 나.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필수 품목을 사입 또는 다른 가맹점으로부터의 위장매입 등 정 상적인 구입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 다. "가맹본부"가 정한 복장 및 개인위생사항 (면도 불량, 슬리퍼 착용 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라.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운영규칙 등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소비자 클레임(품질, 서비스,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 소비자 클레임(품질, 서비스,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클레임 등) 발생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의 시정조치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제휴계약을 맺은 업체 등의 고객에 대하여 차등 대우로 인하여 소비 자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 다. 기타 소비자클레임으로 인한 마포곱창의 브랜드 이미지 등을 저하시킨 경우
- 6.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 광고물 제작시 "가맹본부"의 BI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향상을 위해 "가맹본부"가 제공한 홍보포스터 등 부착물을 규정된 장소 및 시 기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 7. 가맹점포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 "가맹점사업자"가 POS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 나.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간판, 인테리어 등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가맹본부"의 브랜드가 치와 영업의 통일성에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기타 "가맹본부"의 경영지도,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가맹본부"의 업무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한 경우
- 9.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점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0. "가맹본부"가 지정한 가맹점 상호, 명칭 등의 영업표지가 아닌 다른 가맹점의 상호 등과 오인, 혼동케 할 수 있는 상호·명칭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안내(광고, 전화 등 포함)하여 "가맹본부" 또는 인근 가맹 점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1. 기타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위반, 본 계약상 의무 및 사전 합의사항, 기타 "가맹본부" 가 사전에 POS 등과 같은 시스템 또는 "지역담당자"를 통하여 공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12.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6.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가.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나.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 다.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정보공개서 제공→당사 담당팀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가맹계약 조건	완료

- ① 양도 및 양수에 관련된 부동산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② 귀하는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당사에 가맹점의 집기, 설비, 시설물, 인테리어 등의점검을 의뢰하고, 점검 결과 점포환경개선 요구조건이 구비된 경우 그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③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8.경업 및 겸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 및 겸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마포곱창과 동종업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시설 내에서 마포곱창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포곱창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소곱창, 막창, 양·대창 등을 판매하는 곱창·양대창구이 전문점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마포곱창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00 ~ 24:00	주 6일 이상, 월 28일 영업	휴업 희망 시 3일전 승인요청

- ①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당사의 매뉴얼과 세부운영규칙의 준수상태,		
위생상태, 각종 설비 관리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관리내역점검→	
원·부자재 관리상태, 서비스 실태,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수시
기타 점포의 원활한 운영에 관련된 사항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등 귀하의 점포경영 및 운영상태 전반		

9.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교 사건	부담	비율	ㅂ다저쉬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 계획 공고 및 동의절차 진행
7 - 7 -		광고비의 50%	/ 가맹점사업자	→가맹점부담액 통지
공동광고	상품광고 등		의 매출액 비율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납입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
0047	달라짐	기획, 제작 비용	용 이외는 협의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진행하는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おきを含みなり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 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 또는 귀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나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정보공개서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제공 14 일 이후 계약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IV.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 시 실시	부담 1. 영업개시이전 부담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금전지급 방법 참조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D-day	

-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おきを食みなり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0	점포의 시설, 장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점포의 확장 또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o 점포환경	
	비	ㅇ 인테리어 공사비	는 이전을 수반하	청구(공사계약서 등	개선일로부터	
	인테리어 등의	용(장비·집기의 교체	지	공사비용을 증빙할	3년이내에 가	
	노후화가 객관적	비용을 제외한 실내	않는 점포환경개	수 있는 서류 첨부)	맹본부의 책	
	으로 인정되는	건축공사에 소요되	선	→ 90일 이내에 가맹	임 없는 사유	
	경우	는 일체의 비용. 단,	: 20%	본부 부담액을 가맹	로 계약이 종	
0	위생이나 안전의	가맹사업의 통일성	ㅇ 점포의 확장	점사업자에게 지급	료(계약의	
	결함으로 인하여	과 무관하게 가맹점	또는 이전을 수반	(단, 가맹본부와 가맹	해지·영업양	
	가맹사업의 통일	사업자가 추가 공사	하는 점포환경개	점사업자간 별도의	도	
	성을 유지하기	를 실시함에 따라	선	합의가 있는 경우 1	포함)되는 경	
	어렵거나 정상적	소요되는 비용은 제	: 40%	년의 범위내에서 분	우 가맹본부	
	인 영업에 현저	외)		할지급 가능)	부담액 중 잔	
	한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	여기간에 비	
	지장을 주는 경			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례하는 부담	
	우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	액은 지급하	
				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지 아니하거	
				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나 이미 지급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한 경우에는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환수 가능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o 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서		

おけ来の名か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
	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 부
	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 부

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생유의 성영영 <u>월</u> 생하는 문제에 대 한 분석 및 지도	현황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마포곱창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교 육 방 식	기 간	비고
신규교육	운영, 상품 교육	개별 또는 집단강의	5 일 (교육장 2 일, 매장	필수교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실습교육	3 일)	육

^{*}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마포곱창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교 육 방 식	기 간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개별협의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만원/VAT포함)	비고
신규 교육	5일	330	최초 계약 시 이수 (교육장 2일, 매장 3일)
수시 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 시 실시

ЕН ПО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특별 교육	협의 하여 산정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
재교육	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
	업자가 협의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본인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별첨1 재무현황_(2021~202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